

7 깔방의 교회직분과 교회권위에 관한 연구 : 「기독교 강요」(1559)를 중심으로

최윤배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1. 서 론

 일반적으로 교회사에서,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황 무오설에 근거하여, 교회직분에 대한 절대론의 경향을 띠어 왔다면,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기독교회)는 ‘모든 신자제사장직’(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에 근거하여 교회직분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띠어 왔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한국 로마 가톨릭교회와 일부 기독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한국 로마 가톨릭교회 역사상 두 번째 초기경이 탄생했다. 새 초기경의 칼라 사진이 담긴 경축 현수막이 성당 이곳저곳에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띠었다. 이 현수막을 보는 로마 가톨릭교도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새 초기경을 비롯하여,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에 대한 상승된 위상을 재확인했을 것이다. 일부 한국 기독교회 내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앙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일부와 일부 은사운동 속에는 기존 교회의 직분을 경시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그 직분들(목사, 감독, 교사, 장로, 권사, 집사)을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가진 직분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발견되어 기독교회의 직분의 실추가 끝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개혁·장로교회의 교회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칼빈은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회직분을 절대화한 나머지 교회직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위에 두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열광주의자들은 성령과 은사 를 빙자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교회직분 자체를 무시했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우리 시대에(16세기) 접어들어서 교회직분의 효력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로마 가톨릭교회) 교회직분의 위엄을 과장한다. 다른 사람들(열광주의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에게 위임해 버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

칼빈은 성령께서는 성령의 은사와 함께 말씀과 직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주장함으로써, 교회직분의 절대론과 무용론을 피할 수 있었고, 성령의 은사와 교회직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칼빈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7)는 말씀을 인용하여, 교회직분의 절대화사상을 격퇴시키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 3:9)는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직분의 무용론을 침몰시키기도 했다. 개혁·장로교회의 직분은 말씀과 성령의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직분 자체가 말씀과 성령보다 앞설 수는 없지만, 도구로서 교회직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도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교회직분을 무시하는 열광주의적 경향이 교회 안팎에서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때, 교회와 직분자들은 그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 바 됨이 없이 직분자라는 명목으로 봉사한 것을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바 된 직분자들이 되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이고, 교회직분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차원에서 신앙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나 은사운동을 전개하는 자들은 교회직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중한 도구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혁·장로교회는 교회론 특성상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때, 교회직분의 절대론과 무용론이라는 이중적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두 가지 현상이 한국의 일부 개혁·장로교회 안에서 조차 감지되고 있으니, 그 폐해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다.

교회의 직분에 대한 위기만큼이나 교회의 권위에 대한 위기가 한국 기독교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부 교회와 신학은 잘못 이해된 자율(自律)의 이름으로 교회의 정당한 권위 자체를 경시하거나 아예 무시하기까지 하는가 하면, 일부 교회와 신학은 신율(神律)이라는 미명 하에 잘못 이해된 타율(他律)을 가지고 올바른 신율을 탄압하거나 추방해 버린다. 깔뱅 당시에도 재세례파들이나 열광주의자들은 전자의 오류에 빠져서, 제3의 종교개혁까지 주장했는가 하면, 로마 가톨릭교회는 후자의 오류에 빠져 비성경적인 인간전통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체하거나 그 우위에 두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교회나 신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경향은 우리 사회 속에서도 발견되는 절대화된 잘못된 공권력의 남용 현상이나, 정당한 공권력을 무시하는 자유방종 적이고도 무질서한 일부 사회운동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같이 잘못된 사회 현상을 비판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할 교회와 신학이 교회의 정당한 권위는 물론 국가의 정당한 권위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와 신학의 위기일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본 고에서 깔뱅이 이해한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적절성이 있는지를 평가해 보도록 한다.

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제IV권 1장 1절(=IV i 6).

2. 깔뱅의 교회직분

칼빈은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수단으로 이해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도움이나 도구가 없이도 사역을 친히 하시거나 천사들을 시켜서 하실 수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일하시는 편을 택하셨다.”²⁾ 칼빈은 에베소서 4:11에 대한 성경주석을 근거로, 특정한 시대의 필요로 존재했던 교회의 ‘임시직’(extraordinary office ; temporary office)으로서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를 언급하고, ‘일상직’ 또는 ‘영구직’(ordinary office ; permanent office)으로서 목사와 교사를 언급한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교회정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바울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불러진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다음은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복음전도자들이요, 넷째는 목사들이요, 마지막으로는 교사들이다(엡 4:11). 이들 중에 끝에 있는 두 가지 직분만이 교회 안의 일상직이다. 주님께서 그의 나라의 초창기에 처음의 세 직분을 세우셨고, 필요할 때마다 그 직분들을 지금 다시 부활시키신다.”³⁾

스트라스부르에서 1538년부터 1541년에 함께 동역했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창안한 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포함하는 교회의 네 가지 직분을 칼빈은 그대로 받아들여 즈네브에 돌아오자마자 1541년에 작성한 「즈네브 교회법 초안」(*Projet d'ordonnances ecclésiastiques*)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주님의 교회의 통치를 위하여 우리의 주님에 의해서 제정된 직분에는 네 가지 질서가 있다. 첫째는 목사들이요, 다음은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장로들이요, 마지막은 집사들이다. 만약 우리가 질서가 잘 잡혀서 유지된 교회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같은 통치형태를 보존해야 한다.”⁴⁾

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1.
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4.

칼빈에 의하면, 사도직의 목적은 온 천하에 복음전파와 성례전 집행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다. “사도들이 하는 일의 성격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하신 명령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사도들에게는 아무 제한도 하시지 않고 전 세계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하셨는데, 이는 각 민족 사이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 사도들이 파견된 목적은 반역하는 세상을 돌이켜 하나님께 올바르도록 만들며, 복음을 전해 서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사도는 교회의 건축자로서 온 세계에 그 기초를 닦아 두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⁵⁾ 또한 칼빈은 사도직의 기능으로서 성례집례를 추가한다. “주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셨을 때, …… 복음을 전파하며,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어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마 28:19). 그러나 주께서는 이미 사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아 그의 몸과 피의 거룩한 상징인 떡과 찬을 분배 하라고 명령하셨다(눅 22:19-20). 여기서 사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에게 신성불가침의 영원한 법이 부과되었고, 이 법에 의해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며 성례를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도를 사칭한다고 추론한다.”⁶⁾

칼빈에 의하면, 선지자는 특별한 계시에 탁월한 사람이다. “바울은 ‘선지자’라는 명칭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특별한 계시에 뛰어난 자들을 지칭한다(엡 4:11).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거나 흔히 볼 수가 없었다.”⁷⁾

칼빈에 의하면, “복음전도자”는 사도들보다는 지위가 낮으나 직분상으로 사도들 다음에 오는 자들로서 그들을 대리하여 기능을 발휘한 자

4. CO X/1, 15-16 (=LCC XXII, 58).

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4.

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6.

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4.

들이라 여겨진다. 누가, 디모데, 디도 등이 여기에 속하였고,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다음으로 지명하여 세우신 제자 칠십인들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눅 10:1).⁸⁾ 이상에서 설명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의 직분은 “교회 내의 일상직(permanent office)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만 과거에 교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던 곳이나 혹은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 동안만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 그 다음으로 목사들과 교사들인데, 이들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책들이다. 교사들은 제자훈련이나 성례집례나 경고와 권면을 하는 일을 맡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만을 맡았다. 이는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수수한 교리를 유지하려는 것 이었다. 목사직에는 이 모든 임무가 포함된다.”⁹⁾

칼빈은 성경주석에 근거하여 임시직으로서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와 일상직으로서 목사와 교사에 대하여 설명한 뒤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직분 간의 상호 연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칼빈은 사도직과 복음전도직을 하나로 묶어서 목사직에다가 상응시키고, 선지자직을 교사직에다 상응시킨다. “복음전도자와 사도를 하나로 묶어 보면, 서로 일치하는 두 가지 쌍을 상정할 수가 있다. 오늘날 교사들이 그 옛날의 선지자들과 일치하듯이, 오늘날의 목사들이 사도들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선지자 직분은 그들이 뛰어나게 보여 주었던 그 독특한 계시의 은사 때문에 더 두드러졌다. 그러나 교사의 직분도 그 성격상 그와 매우 유사하며, 그 목적 또한 그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세상에 복음을 새로이 전파하도록 택함을 받은 열두 사람들도 그 지위에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능가하였다(눅 6:13; 갈 1:1). 그런데, ‘사도’라는 단어의 뜻과 그 파생적인 의미로 볼 때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사도들’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들이

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4.
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4.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요, 또한 그의 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못하던 새로운 사실을 전파할 임무를 받은 자들의 사명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열두 사람에게(후에 바울이 여기에 추가되지만) 특별한 호칭을 부여하여 나머지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 그러나 목사들은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를 다스린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사도들과 똑같은 책임을 맡았다.”¹⁰⁾

질서가 잘 잡혀서 유지되는 교회의 네 직분에 대해 칼빈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전에 칼빈이 사용하는 직분에 사용된 용어를 살펴보자. 칼빈은 ‘감독’(episcopus), ‘장로’(presbyter), ‘목사’(pastor), ‘사역자/교역자’(minister)를 상호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한다.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감독’, ‘장로’, ‘목사’, ‘사역자/교역자’라고 서로 구별하지 않고 부르는데, 이 용어들을 상호 교환하여 사용하는 성경의 용례에 따라 나도 그렇게 사용했다.”¹¹⁾

칼빈에 의하면, 목사들은 “그저 하는 일 없이 교회에 세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교훈하여 참된 경건으로 향하게 하며, 성례를 집례하고, 올바른 치리를 유지하고, 실시하라는 것이다.”¹²⁾

칼빈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 또는 장로(딛 1:5, 7; 딤 3:1; 빌 1:1; 행 20:17, 28)라고 부르는데, 이 직분은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에 해당되고, 다스리는 일만 하는 사람은 오늘날 장로에 해당되는데, “다스리는 사람들은(고전 12:28)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된 장로들이었으며,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았다. 이 다스리는 직분은 모든 시대에 필요하다.”¹³⁾ “디

1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5.

1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8.

1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6.

1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8.

모데서에서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과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다스리기만 하는 장로들을 구별했다(딤전 5:17). 이 둘째 종류의 장로들은 분명히 도덕적인 문제를 감독하며 열쇠의 권한을 사용하는 일을 위해서 임명된 사람들이었다.”¹⁴⁾

“다스리는 일과 구제하는 일, 이 두 가지는 영구적인 것이다.”¹⁵⁾ 칼빈은 두 가지 종류의 집사에 대해서 말한다.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로마서에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 긍휼을 베풀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 12:8)고 두 가지 종류의 집사에 대해서 언급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공적인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집사직에는 두 가지 다른 등급이 있었을 것이다. 만일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바울은 처음 문장에서 구제물자를 나누어 주는 집사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둘째 문장은 빈민과 병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말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과부들도 두 번째에 속하였다(딤전 5:9-10). 여자들이 맡을 수 있는 공적 직분은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뿐이었다. 이 해석을 인정한다면(또 인정해야 한다),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구제사업을 관리하는 집사들과 직접 빈민을 돌보는 집사들이다. 디아코니아($\deltaικονία$, 봉사)라는 말에는 더 넓은 뜻이 있지만, 성경에서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구제물자를 분배하며, 빈민을 돌보고, 빈민 구제금을 관리하는 일을 맡긴 사람들이다. 그들의 기원과 임명과 직분에 대해서는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했다(행 6:3).”¹⁶⁾

칼빈이 이해한 교회의 네 직분과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목사는 말씀선포와 성례전 집례와 치리 시행을 담당하고, 교사는 성경해석의 일을 맡고, 장로는 다스리는 자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를 담당한다.

1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 1.

1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8.

1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9.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구제 사업을 담당하는 집사와 빈민과 병자 를 돌보는 집사가 있다.

칼빈은 교회의 직분자가 될 사람은 소명과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의 공적 직분을 맡을 사람은 반드시 소명을 받아야 하고, “명령받은 일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한다.”¹⁷⁾ 이 문제와 관련해서 칼빈은 네 가지를 언급한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알아야 한다. (1) 그들은 어떤 종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가? (2) 어떻게? (3) 누구에 의해서 그들은 지명되어야 하는가? (4) 어떤 의식에 의해서 그들은 임직되어야 하는가?”¹⁸⁾

첫째, 교회의 직분자는 내적 부름(소명)과 외적 부름이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내적 부름은 비밀한 소명으로서 각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아는 것이며, 교회가 여기에 대한 중인이 될 수는 없다. 직분을 받는 것은 야심이나 탐욕이나 이기심에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는 소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좋은 목사는 경건을 겸한 학식과 그밖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은사를 가져야 한다.¹⁹⁾ 목사(감독)는 “진전한 교리를 믿으며, 생활이 거룩하고, 그들의 권위를 빼앗거나 그들의 사역에 수치가 될 만한 허물이 없는 사람이여야 한다(딤전 3:2-3; 딤 1:7-8). 집사와 장로들에 대해서도 목사와 동일한 것이 요구된다(딤전 3:8-13).”²⁰⁾

둘째, 교회의 직분자는 종교적 경외감 속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칼빈이 직분자 선택의 방법을 ‘어떻게’라고 말한 것은 선택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때 품어야 할 종교적 경외감’을 의미하는데, 성경에는(행 14:23; 사 11:2)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엄숙한 일을 하고 있다고 깨닫기 때문에 최고의 경의와 주의를 기울이며, 금식하며,

1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10.

1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10.

1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11.

2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12.

기도에 전념했고, 지혜와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 구했다.²¹⁾ 셋째,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선택하시지만, 교회가 그 직분자를 지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다고 언급하신 후에 교회가 그를 지명하게 하심으로써” 교회의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셨다.²²⁾ 문제는 사역자를 선택할 때, 교회 전체에 의해서 또는 그의 동료들과 도덕적 견책을 맡은 장로들에 의해서 선택되는가, 아니면 한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임명되어지는가이다. 칼빈은 성경주석(레 8:4-6; 민 20:26-27; 행 1:15 이하; 행 6:2-7; 행 14:23)에 근거하면서도, 키푸리안의 주장과 로마의 투표방법 등을 참조하여,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 전체의 투표방법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당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동의와 승인에 의해서 부를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게다가 회중의 경박함과 악한 의도나 무질서 때문에 탈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들이 선거를 관장해야 한다.”²³⁾

넷째, 교회의 직분자들은 목사들의 안수(the laying on of hands)를 통해서 임직된다. 칼빈은 성경주석(창 48:14; 민 8:12; 민 27:23; 레 1:4; 레 3:2, 8, 13; 레 4:4, 15, 24, 29, 33; 행 6:6; 행 13:3; 행 19:6; 딤전 1:6; 딤전 4:14)을 통해서 안수의 의미와 임직의 방법을 검토한다. 칼빈에 의하면, 사도들이 사역자들을 임명했을 때, 안수하는 의식만이 있었다. “사람들은 안수함으로써 그들이 사역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눈에 보이는 은사를 선자들에게 베풀 때도 이 방법을 사용했다(행 19:6). 여하간 안수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자를 임명할 때마다 사용한 엄숙한 의식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목사들과 교사들과

2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12.
 2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14.
 2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15.

집사들을 성별했다.”²⁴⁾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안수는 교회의 직분의 위엄을 교회에게 알리는 표징으로서 유익하지만, 미신적으로 오용되지 않아야 하며, 교회 전체가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사들이 안수하여야 한다.²⁵⁾

3. 칼뱅의 교회의 권리

칼빈의 경우, 교회에는 직분이라는 질서와 제도가 있는가 하면, 질서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권리(the power of the Church)가 필요하다. 교회의 권리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교회의 권리의 일부는 감독자 각자에게 속하고, 일부는 지방회이나 총회의 속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에 고유한 영적 권리인데, 게다가 이 영적 권리란 교리에 관한 권리와 재판에 관한 권리, 그리고 입법에 관한 권리로 나누어진다.”²⁶⁾

칼빈의 경우, 교회의 권리의 근거와 목적은 무엇인가? 칼빈은 교회의 권리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시키는데, 이 점에서 그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우리의 논적들은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밖에 둔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권리란 말씀에 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회의 권리가 말씀에서 분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이상한 교리를 추천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름을 사용할 뿐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끊을 수 없는 유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되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에 성령을 약속하실 때 이 점을 확인하셨다.”²⁷⁾ “그러므로 교회의 권리란

2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16.
 2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ii 16.
 2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viii 1.
 2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viii 13.

무한한 것이 아니며, 주의 말씀에 종속되며, 말하자면 교회의 권위는 주의 말씀으로 에워싸여 있다.”²⁸⁾ “문제 전체의 근본은 만일 하나님의 유일한 입법자시라면, 사람이 이 영예를 탈취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첫째, 모든 의와 거룩의 완전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으며 하나님을 알면 선한 생활을 완전히 알게 된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고 합당하게 예배하는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셨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한다.”²⁹⁾

칼빈은 바울서신을 근거로 교회의 권위의 목적은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권세를 주신 것은 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고후 10:8; 13:10). 이 권위를 합당하게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한다(고전 4:1).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그 권위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않아야 한다. 즉,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저의 말을 들으라.’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이다”(마 17:5).³⁰⁾

1) 교리에 관한 교회의 권위

교회의 첫 번째 권위는 교리에 관한 권위이다. 교리에 관한 교회의 권위에는 신앙조항(신조)을 제정하는 권위와 그것을 해석하는 권위가 있다.³¹⁾ 칼빈은 교회가 신조(信條)를 제정하고,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

씀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칼빈은 구약의 죽장, 제사장, 선지자는 물론 신약의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도 교리에 관한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날 교회의 권위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별도로 새로운 계시를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를 제정하고 해석하는 권위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이 권위와 위엄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도들의 사도나 후계자들에게 주실 때, 개인에게 주시지 않고 그들이 임명되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선포하도록 위탁을 받은 그 말씀에 주신 것이다. 그들 모두를 차례로 검토해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에 따라서만 가르치며 대답하는 권위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직분을 맡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에 동시에 자기의 것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을 백성 앞에 내세워 말을 하게 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이 할 말을 가르치신다. 그들은 주의 말씀 외의 어느 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³²⁾

칼빈에 의하면,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과 역사들로 구성된 문서는 그 전체가 옛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교사들과 제사장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표준에 일치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다. 그들의 직책은 하나님의 입에서 받은 말씀으로 백성에게 대답하는 것뿐이었으므로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불법이었다(참고, 신 5:32).³³⁾ 칼빈에 의하면,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것을 보여 주셨다. “드디어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일과 숙고해야 할 일을 모두 우

2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viii 4.

2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 8.

3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viii 1.

3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viii 1.

3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viii 2.

3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viii 6.

리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전에는 희미한 빛이 있었을 뿐이나 이제 의의 태양을 비추셨으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정오의 밝은 빛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완전한 빛이 있다.”³⁴⁾ “곧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뒤에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을 전연 남겨 두시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³⁵⁾ 칼빈에 의하면, 사도들도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사도들에게 허락된 것은 옛날 예언서들에 있는 것뿐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도들은 고대에 기록된 성경을 해설하며 또 거기서 가르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일을 할 때에도 주의 지도를 받아야 했으나, 곧,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할 말을 어느 정도 불러 주신 것이다.”³⁶⁾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칼빈은 사도들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도들은 성령의 말씀을 틀림없이 받아썼기 때문에 그들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한다.”³⁷⁾

칼빈의 경우, 교회가 신조의 제정과 해석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하여 신조를 제정하고, 해석하는 권위를 뜻한다. 바로 이점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오늘날 교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사도들은 성령의 말씀을 틀림없이 받아썼기 때문에, 그들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후계자들은 성경에 봉인돼 있는 것을 가르치는 직분만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실히 사역자들은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복종하도록 하신 그 교리를 단단히 붙잡아야 할 뿐이라고 가르친다.”³⁸⁾

3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viii 7.

3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viii 7.

3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viii 8.

3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viii 9.

3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viii 9.

교회에 의해서 제정되고, 해석된 신조가 성경보다도 더 큰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교회에 반대하여, 칼빈은 교회의 전승(傳承)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들은 다시, 교회는 사도들의 글에 몇 가지를 첨가할 필요가 있다느니, 사도들은 자신이 분명히 가르치지 못한 것을 후에 말로 보충했다느니 하고 중얼거린다.”³⁹⁾ “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 즉, 주의 말씀에 계시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며 주장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⁰⁾

칼빈은 교회회의의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회의들에는 아무 결정권도 없다는 말이냐고 물을 것이다. 물론 교회의 회의들은 결정권은 가지고 있다. 나는 여기서 모든 회의를 배척해야 된다든지 모든 회의들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 다만 나는 어느 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마다 회의는 언제, 무슨 문제로, 무슨 목적으로 열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출석했는가를 사람들이 우선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그 다음에 회의에서 취급할 문제를 성경을 표준으로 하여 검토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정이 자체의 중요성을 지니고, 또 이전의 판단에 비추어 고려되어져야 하지만, 내가 언급한 검토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⁴¹⁾

칼빈은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폴 회의, 제1차 에베소서 회의, 칼케돈 회의 등 초기 교회의 회의들을 “기꺼이 공경하여” 받아들이면서, 이 회의들 속에는 “성경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해석이 있었을 뿐이며, 거룩한 교부들은 당시에 있던 신앙의 원수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영적인 지혜로 이 해석을 적용했다.”고 주장한다.⁴²⁾

3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viii 14.

4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viii 15.

4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x 8.

4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x 8.

2) 입법에 관한 교회의 권리

교회의 두 번째 권위는 입법에 관한 권위다. 교회의 입법에 대한 권위를 중심으로, 칼빈은 크게 두 진영과 논쟁했다. 한편으로 칼빈은 교회의 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인간적 전통에 근거한 비성경적인 교회법을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교회를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⁴³⁾ 성경에 근거한 교회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도 비판했다.⁴⁴⁾ 칼빈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제정한 교회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인간적 전통에 근거한 법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인간적 전통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법이며, 사람들이 만든 법이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정하려는 구실이거나 구원에 필요한 일들에 대한 규정을 만든다는 구실로 양심을 여러 가지 가책으로 속박하려는 것이다.”⁴⁵⁾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회법은 사도들이나 사도적 전통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사도들의 명령이 기록에 남지는 않았으나 관습과 관례에 의해서 전달되었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용될 수 없다.”⁴⁶⁾

칼빈은 비성경적인 교회법을 비판했지만, 교회법 자체를 부정하기는 커녕, 성경적인 교회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간의 유전은 사람의 양심에 불경건한 속박을 가하는 것이며,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말을 들을 때, 무지한 사람들은 교회의 질서를 형성하는 모든 법을 말살하려고 하는 예가 많다.”⁴⁷⁾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다. 모든 인간 사회는 공공의 평화촉진과 화합의 유지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조직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

4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ix 1-26.

4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 30.

4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 16.

4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 18.

4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 27.

사이에 거래에는 언제든지 어떤 절차가 있으며, 공공생활의 예절을 위해서도 그 절차는 필요하다. 이 점은 특히 교회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모든 일이 정연한 법 아래 있을 때 교회는 가장 잘 유지되며, 화합이 없으면, 전연 교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전 14 : 40)고 한 바울의 명령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⁴⁸⁾

칼빈은 교회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뒤에 교회법의 성격을 규정한다. 첫째, 교회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근거로 성경에서 이끌어 낸 법들 곧, 인간이 만들기는 했으나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들만을 인정한다고 언명할 필요가 있다.”⁴⁹⁾ 둘째, 교회법은 구원에 필요한 규정이 아니라 질서와 예절에 필요한 규정이다. “주께서는 진정한 의의 골자 전체와 그의 위엄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든 국면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거룩한 말씀에 충실히 포함시키며 분명히 표현하셨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주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외형적인 규율과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세히 명령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이런 일은 시대의 형편에 의존한다는 것을 아시고 한 형식이 모든 시대에 적합하다고 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⁵⁰⁾ “이런 규정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규정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 결과 여러 가지 가책으로 양심을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규정을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연결시키며, 따라서 규정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⁵¹⁾ 칼빈은 참 종교를 모호하게 만들고, 인간의 양심을 괴롭히는 잘못된 교회법과 올바른 교회법 사이를 구별하는 표지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회법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 또는 그

4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 27.

4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 30.

5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 30.

5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 27.

중에 하나인 것(신자들의 성회에서는 모든 일이 적절하고 위엄 있게 행해지고, 또 인간의 공동체는 인간애와 절도의 유대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상기한 구별의 표지를 알 수 있다.”⁵²⁾ 셋째, 교회법은 사랑의 원리가 작용해야 한다. 교회법의 규정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서로 사랑을 배양하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⁵³⁾ “무엇이 해가 되고, 무엇이 덕이 되는지는 사랑이 가장 잘 판단할 것이다. 사랑을 인도자로 삼으면 모든 일이 안전할 것이다.”⁵⁴⁾

3) 재판에 관한 교회의 권위

교회의 세 번째 권위는 재판(사법)에 관한 권위다. 칼빈은 교회의 재판권을 매우 중요시한다. 교회의 세 번째 권위인 재판권은 “교회를 질서정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권리”이며, “도덕적 권징(치리)”(the discipline of morals)을 위한 목적으로 필요하다.⁵⁵⁾ “이 재판권은 교회의 영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성된 질서에 불과하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처음부터 교회에 재판소를 설치하고,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견책을 하고, 죄악을 조사하며, 열쇠의 직책을 다하게 했다.”⁵⁶⁾

칼빈은 교회의 재판권은 영적이며, 영구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교회의 재판권은 ‘영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질서이다.⁵⁷⁾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마 18장) 보다 깊이 숙고하는 사람은 거기에 묘사된 것이 일시적인 교회제도가 아니라 고정된 영구적인 제도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⁵⁸⁾ 교회의 교리의 권리와 입법의 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듯이 교회의 재판권도 하나님의 말씀에

5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 28.

5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 28.

5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 30.

5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 1.

5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 1.

5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 1.

5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 4.

근거하기 때문에, 교회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의 결론은 이 구절(마 18:9)에서 말씀하는 열쇠의 권한은 복음 선포를 뜻하며, 사람들에게 그것은 권한(power)이라기보다는 섬김(ministry)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 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게 주신 것이요, 사람들을 불러서 그 말씀을 섬기는 자들로 삼으신 것이기 때문이다.”⁵⁹⁾ “우선 교회의 재판권의 목적은 죄악을 막으며, 발생한 불상사를 제거하는 것이다. 재판권을 행사할 때마다 고려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즉, 이 영적 권리의 첫째, 칼의 권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둘째,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닌 합법적인 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교회가 비교적 순수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준수되었다(고전 5:4-5). 그런데 거룩한 감독들은 권위를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벌금이나 투옥이나 그 외의 국가의 벌칙을 쓰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사용했다. 이것은 합당한 일이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벌, 예를 들면, 그 최후의 벼락은 출교선고이며, 이것은 불가피한 때에만 사용한다. 이 처벌을 하는 데에는 신체적 강제력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만을 믿는다.”⁶⁰⁾ 칼빈은 성경 주석에 근거하여 교회사에서 재판법에 대한 잘 못된 이해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⁶¹⁾

칼빈은 교회의 재판에 관한 권위를 교회에 주어진 열쇠에 대한 권리에 근거시킨다. 칼빈은 마태복음 16:19과 마태복음 18:17~18 사이에 존재하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두 구절은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고, 그 뜻이 약간 다르다. 그러나 아주 달라서 서로 연결이 없을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두 구절에는 같은 점이 있다. 즉, 두 구절은 모두 일반적 진술이며, 매고 푸는 동일한 권리(즉,

5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 1.

6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 5.

6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 5-16.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와 같은 명령과 같은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점도 있다. 즉, 마태복음 16:19은 특히 말씀을 맡은 자들이 실천하는 전도에 관한 것이고, 마태복음 18:17~18은 교회에 맡겨진 출교 규정에 관한 것이다. 교회는 출교시킨 사람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그를 영원한 멸망과 절망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과 품행을 책망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고 항상 경고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가진 연합에 참가하기 때문이다.”⁶²⁾ 칼빈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마태복음 18:17~19을 잘못 해석하여 로마 주교의 수위권까지 주장했다고 비판한다. “자기도취에 빠진 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이 두 구절을 근거로 삼아 고해나 출교나 재판권이나 입법권이나 사면(赦免)을 무분별하게 확립하려고 애쓴다. 참으로 마태복음 18:19을 인용해서 로마 주교의 수위권을 확립하려 한다.”⁶³⁾

칼빈은 국가에 제도가 필요하듯이 교회에도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국가의 제도와 교회의 제도를 구별하면서도, 양자를 상호 배타적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요컨대 교회정치는 하나님의 구속활동에 속하고 세상정치는 하나님의 창조활동에 속한다. 이 두 정치는 한 하나님의 활동으로부터 분리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별되어야 한다.”⁶⁴⁾ “도시에 집권자와 정치제도가 없으면, 그 도시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 영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국가 행정조직과는 다른 것이지만, 국가 행정조직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⁶⁵⁾ 칼빈은 양자 사이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모든 일은(교회의 재판권) 임시적인 것이었고, 집권자들이 우리의

6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 2.

6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 2.

64. 이양호, 「칼빈 : 생애와 사상」, p. 200.

6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 1.

종교를 믿지 않았을 때에만 통용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인데, 그들은 교회의 권위와 국가의 권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에는 벌을 주며, 강요하는 칼의 권한, 즉 강제력이 없다. 교회는 집권자처럼 투옥이나 기타 형벌을 가할 수 없다. 문제는 죄인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처벌하는 것이다. 아니라, 죄인이 자신을 스스로 징계하여 회개를 표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매우 다르다. 교회는 국가가 당연히 할 일을 떠맡지 않으며, 국가는 교회가 행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다음의 예가 이를 분명하게 할 것이다. 술에 취한 사람이 있을 때, 질서가 잡힌 도시에서는 그에게 투옥의 형벌을 가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법률과 관리와 외형적인 정의는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불평을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교회는 여기서 면추어 설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성찬에 참가시킨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신성한 제도에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 또 불미한 행동으로 교회에 누를 끼친 사람은 엄숙하게 회개를 선언함으로써 자기가 지은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도리상의 당연한 요구다.”⁶⁶⁾ 칼빈은 국가를 통한 범죄자에 대한 강제적 처벌과 부도덕한 신자에 대한 교회의 권징을 구별하면서도, 양자 사이의 상호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관리가 형벌과 신체적 제재로 교회를 추문으로부터 순화시켜 주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사악한 자들의 수를 줄임으로써 관리들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 관리와 목사의 가능들은 각각 서로 방해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어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⁶⁷⁾

4) 교회의 재판권과 열쇠권과 관계된 교회의 권징(치리)

칼빈은 교회의 권징문제를 교회의 재판권과 열쇠권과 밀접한 관계

6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 3.

6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 3.

속에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의 권징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권징은 대개 열쇠의 권한과 영적 재판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⁶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취급했다 시피, 칼빈의 교회의 세 가지 권위인 영적 재판권은 권징을 행사하는 재판권이며, 교회의 열쇠의 내용은 교회의 복음 선포와 교회의 출교로 구성되어 있다.

칼빈은 권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권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권징을 혐오하여, 권징이라는 말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음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회도, 아무리 작은 가족이라도 권징 없이는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 가능한 한,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할 교회로서는 더욱더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하는 교리가 교회의 영혼이듯이, 권징은 교회의 근육(힘줄)인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자체들이 각각 자신의 위치에 있도록 함께 묶여 있다.”⁶⁹⁾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대하여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길들이는 굴레와 같으며, 나태한 사람을 고무하는 박차와 같고, 더욱 심각한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의 유화함으로써 부드럽게 징벌하는 아버지의 매와 같다. ……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경건한 사람들이 항상 사용한 시정책은 이 권징뿐이다.”⁷⁰⁾

칼빈은 권징의 목적에 대해 세 가지를 주장한다. “교회가 이런 시정책과 출교를 사용하는데 세 가지 목적이 있다.”⁷¹⁾ 권징의 첫째 목적은 부도덕한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빼앗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신 거룩한 교회를 보호하고,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보존하는데 있다.⁷²⁾ 권징의 두 번째 목적은 “악한 자들과 항상 교제함으로써

6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1, 참고 IV xi 1, IV xi 5-6.
 6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1.
 7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1.
 7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5.

선한 자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⁷³⁾ 권징의 세 번째 목적은 “비루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⁷⁴⁾ 다시 말하면, 권징의 세 가지 목적은 부도덕한 자로부터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제거하여 거룩한 교회의 이름과 명예보호, 악한 자에 의한 선한 자의 죄 감염 방지, 죄지은 자에게 회개기회의 제공이다.

칼빈은 권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권징의 방법과 절차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엄격주의를 배격하고, 온건주의를 선택한다.⁷⁵⁾ “우리는 그러한 엄격성이 ‘온유한 심령’(갈 6 : 1)과 함께 결합되는 것이 교회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명령한 것처럼 별을 받는 사람이 너무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고후 2 : 7)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치려다가 도리어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치려는 목적으로 본다면 온화한 규칙을 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⁷⁶⁾ 칼빈은 교회사 속에서 어거스틴 당시 도나투스파와 그 당시 재세례파를 대표적인 엄격주의자들로 규정한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도나투스파의 신경과민 때문이었다. 그들은 교회 내에 있는 허물을 감독들이 말로 책망하면서 출교로 처벌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 감독들이 규율을 위반했다고 맹렬히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양떼로부터 불경진한 분리를 감행했다. 오늘날의 재세례파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 모든 점에서 천사와 같이 완전하지 않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모임이 없다고 하며, 이런 열심을 가장하여 덕을 세우는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는 것이다.”⁷⁷⁾ “이러한 온유한 태도는 교회 전체에 필요하다. 교회는 타

7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5.

7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5.

7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5.

7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8-13.

7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8.

7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12.

락한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야 하며, 극도로 엄격한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바울이 지시한 대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야 한다(고후 2:8). 마찬가지로 평신도들도 각각 이 같은 온건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도록 힘써야 한다.”⁷⁸⁾ 교회권징의 방법과 수단이 경건하게 유지되려면, “서로 용납함으로써 지키라”(엡 4:2)고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 곧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엡 4:3)에 주의해야 한다.⁷⁹⁾

권징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목사와 장로는 먼저 사적(私的) 충고의 기회를 만들고, 이 충고가 거부되거나 죄악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중인들 앞에서 충고하고, 그 후에 교회재판소, 즉 장로의회에 소환하여 엄중히 충고하고, 여기서도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계속한다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마 18:15, 17) 신자들의 교제로부터 제거해야 한다.⁸⁰⁾ 비밀한 죄를 시정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절차를 밟아야 하며(마 18:15),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공적으로 책망해야 한다.⁸¹⁾ 경한 죄와 중한 죄는 구별되어야 하며, 중한 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충고나 견책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⁸²⁾

칼빈의 경우, 권징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수찬정지와⁸³⁾ 출교는⁸⁴⁾ 매우 큰 벌에 해당된다. 우리는 특별히 출교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칼빈이 이해한 출교에 대해서 살펴보자. “출교를 하는 목적은 죄인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자는 것이며, 신자들 사이에서 나쁜 예를 제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이 훼방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본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 죄인이 교회에 대해서 회개한 증거를 보이고, 그 증거에 의해서 그의 힘이 닿는 대로 교회에 끼친 누를 씻어 버린다면 더 이상 그를 추궁해서는 안 된다. 추궁한다면 그때에는 엄격함이 도를 넘게 될 것이다.”⁸⁵⁾

로마 가톨릭교회나 재세례파는 출교당한 사람을 선택론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린바 된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칼빈은 여기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회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선택된 사람들의 수효에서 삭제하거나 그들이 이미 멸망한 사람인 것 같이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을 교회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사람으로 그러나 떨어져 있는 동안에 한해서만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이 온유한 태도보다 완고한 태도를 보일 때라도 우리는 그들을 주의 판단에 맡기고, 그들의 일이 앞으로 현재보다 잘 되기를 희망해야 한다. 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손 안에만 있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주의 법에 따라 각각 사람의 행위의 성격만을 판단해야 한다.”⁸⁶⁾

칼빈은 출교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정과 치유 및 구원 수단으로 이해한다. “출교와 저주는 다르다. 저주는 모든 용서를 거부하고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 정죄하는 것이다. 출교는 그의 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며, 징계하는 것이다. 출교도 벌을 주는 것이지만, 장차 정죄를 받으리라는 것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사람을 불러 돌아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화해와 교제의 회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⁸⁷⁾ 출교의 과정에는 교회의 직분자를 포함하여 교회 전체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출교의 주체자가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7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9.

7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11.

8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2.

8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3.

8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4.

8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6.

8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8-10.

8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8.

8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9.

8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10.

“바울이 사람을 출교한 조치는 합당한 것이었으나 거기에는 장로들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알고 찬동했다는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 참으로 이 조치의 과정 전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증거하는 엄숙성이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재판권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⁸⁸⁾

국가의 재법권과 구별하여 교회의 독자적인 재판권에 근거시켰던 외콜럼파디우스의 권징 개념은 마르틴 부처를 통해서 칼빈에게 수용되었다. 칼빈이 이해한 교회의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권징, 주님 자신이 시행하시는 권징이라는 사상과 함께 사랑을 동반하는 온건한 방법을 통한 권징이다. 이 권징은 단순한 저주나 처벌 수단이 아니라 교정과 치유와 구원 수단으로 이해된다.

4. 결 론

오늘날 한국교회와 목회현장에서 고개를 들고 나타나는 교회직분의 절대론과 무용론의 확산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방종으로 빠져 버린 잘못 이해된 자율과 타율로 잘못 이해된 신율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존중해야 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와 질서를 폐기 또는 무시하는 현상을 의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깔뱅의 온고지신의 지혜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본 고를 시작했다.

깔뱅은 임시직으로서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를 언급하고, 항존적으로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열거한다. 목사는 말씀선포와 성례전 집례와 치리를 시행하고, 교사는 성경해석의 일을 맡고, 장로는 다스리는 자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를 담당하고, 집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구

제사업을 담당하는 집사와 빈민과 병자를 돌보는 집사가 있다. 교회의 직분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어야 하고, 종교적 경외감 속에서 선택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선택하시지만, 교회가 그 직분자를 지명해야 하며, 목사의 약수를 통해서 임직되어야 한다.

깔뱅은 교회의 권위를 크게 세 가지, 즉 교리에 관한 권위, 재판에 관한 권위, 그리고 입법에 관한 권위를 주장한다. 교회의 권위는 감독자, 지방회의, 총회에 각각 속한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며, 교회의 권위의 목적은 질서와 데를 유지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데 있다.

깔뱅은 교회직분과 교회권위 문제로 크게 두 진영과 대립하였다.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회직분의 절대론의 우를 범하는 반면, 재세례파나 열광주의자들은 교회직분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깔뱅은 ‘중간의 길’(via media)을 통해서 교회직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질서와 은사의 차원에서 이해했다. 또한 교회의 입법문제와 관련해서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회의 입법의 근거를 인간의 전통에서 찾는 반면, 열광주의자들은 교회입법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깔뱅은 교회의 입법은 구원에 필요한 규정은 아니지만, 질서와 예절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히 교회의 재판권과 열쇠권과 관계된 권징(치리)과 관련해서 로마 가톨릭교회는 권징을 사법적 관점에서 이해한 반면, 재세례파는 순전하고도 거룩한 교회의 관점, 즉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교회와 재세례파의 경우, 출교를 당한 사람은 구원과 선택에서 제외된 벼랑받은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깔뱅의 경우, 권징은 교회의 근육(힘줄)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하지만, 권징의 목적은 거룩한 교회를 보호하고, 선한 사람에게 죄의 감염을 예방하고, 악한 자를 회개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권징의 엄격주의를 피하고, 권징은 사랑과 온건한 태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정

8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i 7.

과 치유와 구원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인자한 아버지의 사랑의 매와 같은 것이다. 국가나 세속정부가 갖는 사법권과는 독립적으로 교회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깔뱅의 권징 개념은 외콜람파디우스의 사상이며, 이 사상을 마르틴 부처가 깔뱅에게 전해 준 것이다.